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에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2-140
- 나. 제 안 자: 고병준 의원 외 8명
- 다. 제안일자: 2022년 11월 22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11월 25일(금)

2. 제출사유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규정하여, 거리예술가들의 참여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리예술”에 문학과 전시를 포함함(안 제2조)
- 나.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4. 관계법령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나.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및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22일 고병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 취지는 ‘거리예술’ 분야에 문학과 전시를 포함하고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우리 구 거리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동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하여 <문학> 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에 <전시> 역시 문화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리예술의 범위에 이 분야를 추가하고,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우리 구 거리예술 분야의 발전을 꾀하려는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함.
- 마포구 거리예술 현황을 보면 오래 전부터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구에서도 2019년 거리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홍대 걷고싶은 거리 운영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1.~10.
승인건수	7,971	1,719	15	1,661
유 형	버스킹(음악, 댄스 등), 문화예술행사, 공공캠페인, 방송촬영 등		(비대면)문화예술행사, 전시, 방송촬영 등	버스킹(음악, 댄스 등), 문화예술행사 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공연장 운영 중단(2020.11. ~ 2022. 3.),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버스킹존 2개 구역 운영 재개(2022. 4.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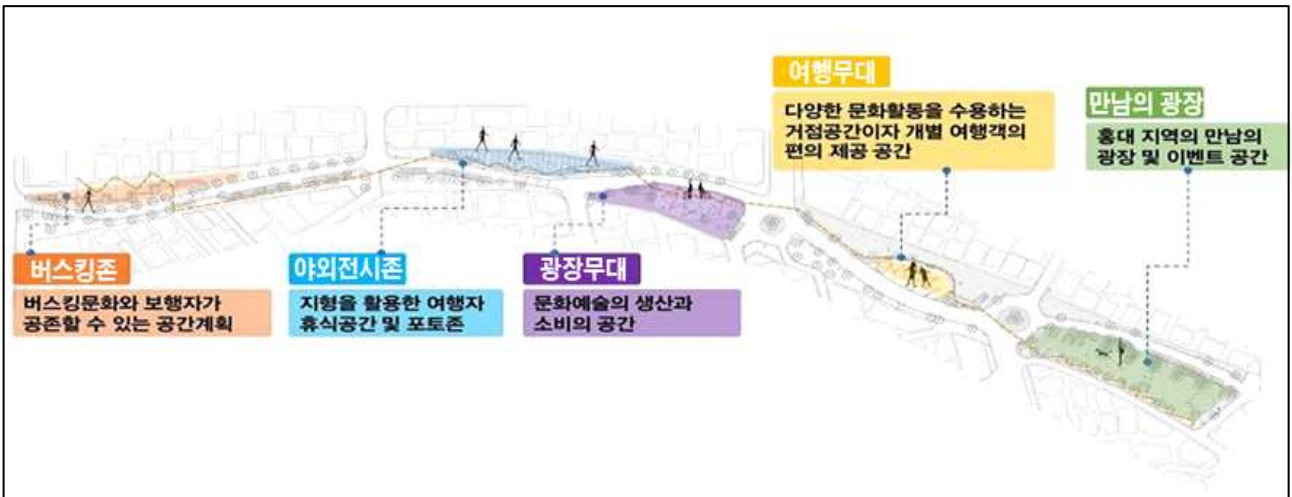
- 다만, 현재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장소 사용승인, 질서 유지 등이어서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예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임.

- 거리 예술을 포함한 각종 공연·전시 활동의 장려는 홍대 관광특구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술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문화예술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은 형식과 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 전문지식이나 예술적 재능을 가진 직업인이자 노동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1】

□ **홍대 걷고싶은거리 현황**

- 위 치 : 마포구 어울마당로 107~155-1
- 규 모 : 5개 구역 / [폭] 15~45m, [길이] 500m
- 구역현황 및 위치도



버스킹존	야외전시존	광장무대	여행무대	만남의 광장
버스킹존 3개존 (거리공연)	문화·예술행사, 공공캠페인, 공익 관련 행사 등			

【참고자료 2】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